

산업자원부는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관리체제 개편에 따라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업무 체제 개편내용 등을 반영한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7월 12일 개정 고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작년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한 것을 대폭 강화하여 금년에는 총 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지에서는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의 개정된 내용을 게재하였다.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79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2조 및 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라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7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산업발전법에 따라 항공우주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 제24조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수요조사, 기획, 수평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평가기관"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실시기업"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사업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말한다.
7.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말한다.
8. "유형적 발생품"이라 함은 산업재산권을 제외한 연구기자재, 시제품 등 개발사업의 결과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개발사업의 구분)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1로 구분한다.

1. 상용기술개발사업: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부속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2. 기초기술개발사업: 특정품목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용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등 기술개발사업, 기초연구차원의 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3. 연구기획사업: 항공우주분야의 기술개발과 관련한 정책연구사업
4. 국제공동개발사업: 국내기관이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

제2장 관련기관 및 책임자

제5조(전담기관의 업무 등) ①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발사업의 수요조사
2. 개발사업 및 주관기관의 선정평가
3. 개발사업의 수행관리
4. 개발사업비의 정산, 환수 및 관리
5.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6. 개발사업 성과의 사후관리
7. 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지원
8. 기타 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발사업 관리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발사업의 선정 심의
2. 주관기관의 선정 심의
3. 개발사업의 평가결과 심의
4.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의 심의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
2.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장
3.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
4. 국방부 획득정책과장
5. 과학기술부 우주항공기술과장
6.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상근 부이사장
7.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장
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부장
9.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관·학·연 전문가중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하나,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으로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회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소속 직원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와 전담기관의 개발사업 관리책임자를 공동간사로 둔다.

제8조(평가기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둔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발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비 검토
2. 개발사업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3. 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9조(주관기관) ① 주관기관은 산업발전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당해 분야의 개발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3. 개발사업비의 관리
4. 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제10조(총괄책임자) ① 당해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개발사업비의 사용 발의
3. 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의 관리
5. 개발사업 결과의 보고
6.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요구한 사항의 수행

제11조(참여기업)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당해 개발사업에의 공동 참여
2. 개발사업 중 담당하는 부분의 개발책임
3. 개발사업 중 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관리
4. 개발사업 결과의 우선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

제12조(위탁기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위탁사업의 수행
2. 위탁사업비의 관리

제3장 개발사업의 선정 및 공고

제13조(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전담기관은 차기 년도의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당해 년도 1/4분기까지 수립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술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 수요전망 및 소요 예산
2. 항공우주분야 주요 업체의 현황 및 기술개발 동향
3. 전년도 기술개발 성과 및 활용현황
4. 기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14조(개발사업의 선정) ① 전담기관은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된 개발사업에 대해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단계별 육성계획
2. 관계부처에서 추진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5조(개발사업의 확정 및 공고)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산 및 산업기술개발정책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는 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개발사업의 주요내용, 지원자격, 기술료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사업계획의 심의·확정 등

제1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총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1차년도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주관기관의 선정) ① 전담기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기관의 기술성 및 사업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종합 평가한 후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목표 및 수행방법
2. 개발사업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및 연구관리능력 포함)
3.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의 연구시설 확보정도
4. 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5. 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6. 제35조에 의한 기술료를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정책상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은 우대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사업자가 해당분야의 개발사업에 지원한 경우
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문화 또는 계열화 업체

가 해당분야의 개발사업에 지원한 경우

⑤ 전담기관은 제1항에 의한 평가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에 보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별 개발사업을 통합 또는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전담기관, 평가기관 및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총괄사업계획서의 작성) ① 전담기관은 제17조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당해년도의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총괄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기술습득효과, 기술파급효과, 사업성 등의 분석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개발사업 선정의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결된 사업의 경우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

제20조(사업비의 계상) ① 사업비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단, 산업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목별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인건비는 개발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의한 실지금액에 따라 참여율별로 계상되며 동일 연구원이 다수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직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건물, 시약 및 재료비, 외주가공비, 기자재 구입비 및 인차료 등을 말하며 세부비목은 개발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간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제집비 등을 말하며 세부비목은 개발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제4조 제4호사업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공통개발분담금은 기술정보활동비로 계상한다.

4. 개발보전비는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리에 따른 제반 간접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 금액 총액의 15% 이내(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 5% 이내)로 계상되며 개발사업비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연구장려금은 연구인력의 농륙제고를 위하여 국·공립연구기

관,대학 등 정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 받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제1호 인건비중 해당 연구원 인건비의 30%이 내로 한다.

6. 위탁사업비는 당해 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에 나열한 바목별로 계상하고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계상하며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정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국·공립연구기관, 대학의 정규직원 인건비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이외의 비용은 현물로 계상한다.

③ 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의 인건비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의 참여 연구원 전체 인건비의 50%이내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1항에 의한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정부출연금의 지원비율) ①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정부출연금은 별표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시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 수행중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유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차기년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개발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체사업의 정부출연금의 지원 범위내에서 연차별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부담형태) ① 당해년도 사업비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현물형태로한다.

1. 인건비
 2. 보유 연구기자재의 사용료(임차료)
 3. 보유 건물,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 ② 민간부담금중 현금의 비율은 20%이상으로 한다.

제23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 등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 체결된 사업기간 이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기간 이외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비용이라도 전담기관이 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국제공동개발사업의 협약전 비용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20조 제1항 제1호로 계상된 인건비는 주관기관의 장이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기관의 보수체계, 참여 연구원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협약당시의 사업비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2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위탁사업비가 당해 년도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위탁사업의 비목별 20%이상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보전비는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견품, 시작품 제작 및 기자재 구입변경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위탁사업의 경우 위탁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협약체결 등

제24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도로 정한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동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 제출전에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등이 이 요령 및 관련 세부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전담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약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간에 공동으로 체결하며 위탁개발사업은 주관기관과 위탁개발기관간에 체결한다.

④ 주관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래의 주관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속기관에게 당해 개발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산업지원부 장관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산업지원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개발사업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산업기술정책상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① 산업지원부 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시 정한 정부출연금을 전담기관에 분할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정부출연금을 지급 받은 후 지체없이 해당 주관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경영여건 악화,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당해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산업지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출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에서 정부출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전담기관이 산업지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매 반기별로 정부출연금 지급현황 및 이차발생현황을 산업지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고, 평가 등

제27조(중간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은 당해 개발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 당해 년도 사업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이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최종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은 개발사업 최종 종료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초록 및 참여기업의 대표 등의 사업성과확약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이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중간평가) ① 전담기관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중간보고서를 검토한 후 당해 개발사업에 대하여 “계속”, “중단”, “보완”, “조기완료”의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은 이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⑤ 전담기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조치 결과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산업지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산업지원부 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 등을 검토한 후 당해 년도 중간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최종평가) ① 전담기관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후 “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산업지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지원부 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 등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현장조사 등) ① 산업지원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직원, 전담기관 또는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의 진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업 대표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②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지원부 장관은 현장조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

을 경우에는 해당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위탁기관에 대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기관은 당해 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의 서식에 따라 당해 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대학인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총(학)장의 확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당해 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년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등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당해 개발사업 최종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환수 및 제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단,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비 잔액을 차기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의 경우 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의 경우 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연구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단,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패"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매

분기별로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환수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연구기관, 학교 등 관련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부·양도할 수 있다.

제8장 개발사업성과의 활용

제34조(개발사업성과의 환용) ① 제4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조기완료" 또는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이하 "실용화사업"이라 한다)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실용화사업 시행시 해당 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우선 참여시켜야 한다. 단, 주관기관이 실용화사업 참여를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이 아무런 의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참여의사가 없음을 통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조기완료" 또는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성과의 공개활용에 관한 계획을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4조 제1호 및 제4호 사업의 경우 제1항의 기간내에 실용화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사업성과를 공개 환용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매년 최종보고서의 목록, 최종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학교, 기업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성과를 공개 환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거래소 등과 연계하여 관련자료를 전산화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35조(기술료의 납부) ① 제4조 제1호 및 제4호 사업의 경우 "조기완료" 또는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협약체결시 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는 당해 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40%이내로 한다. 단, 제4조 제4호 사업의 경우 공동개발분담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중 직접개발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은 전액 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술료는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 명의로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어음의 만기일은 최종평가결과 통보 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8년 이내에 균등분할로 한다.

④ 제3항의 어음 만기일 이전에 실용화 지연 및 실용화 실패의 사유로 기술료 납부기한연장, 기술료감면 또는 기술료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실용화사업 성공여부를 평가하여 협약시 정한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 및 제재를

할 수 있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기술료를 조기에 완납할 경우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산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① 당해 개발사업 수행결과 발생된 산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단,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소유로 하며, 정부소유 지분은 해당 주관기관이 기술료를 납부한 시점부터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② 당해 개발사업의 수행중에 발생한 연구기자재(연구시설포함) 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금액 범위내에서 참여기업이 보유하고자 하는 연구기자재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종료 후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③ 비영리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적 발생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이 아닌 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유형적 발생품 및 지적재산권을 유상양도할 경우에 해당 대금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사용기준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우수연구개발의 장려 및 촉진사업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② 전담기관은 징수된 기술료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료 징수결과와 사용실적을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전담기관의 지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으로 하되,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평가기관의 지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제40조(관리운영 예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년도 개발사업 예산의 5%범위내에서 개발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내에서 우수기술을 개발한 연구관련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수당지급) 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업무의 직접적인 수행과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지침의 제정)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요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서류양식 등에 대해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은 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4조(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의 준용) 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요령의 시행 이전에 종전 요령에 의해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요령의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개발사업은 당해 사업의 협약체결시 적용된 요령을 계속 적용한다. 단,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예외조치) 2개 이상의 부처에서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운영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별 표) 정부출연금의 지원비율

개발사업의 구분	주관 기관의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제4조 1, 4호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	사업비의 50%이내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65%이내, 해당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75%이내)
제4조 2호	연구소 대학 등	사업비의 65%이내
	기업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75%이내)
제4조 3호	기업	사업비의 80%이내
	연구소 대학 등	사업비의 100%이내
제4조 3호		사업비의 100%

제41조(포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0조의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